



We Draw The Lines.ca.gov

555 Capitol Mall, Suite 300
Sacramento, California 95814
Call toll free: 1-866-356-5217
Fax: 916-319-9295
Email: votersfirstact@auditor.ca.gov

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?

2008년 11월 총선 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유권자 우선 법안(또는 "법안")인 주민 발의안 11호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의 창설이 승인되었습니다.

본 법안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과정은 주 감사관에 의해 시행됩니다.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권자는 위원회 후보 등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- 위원회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상태로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유권자
- 지난 3번의 주 전체 총선에서 최소 2번 이상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

그러나 법안이 이해상충의 대상으로 정의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원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.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 10년 동안 지원자 혹은 지원자와 "실질" 관계가 있는 직계가족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정의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, 이는 이해상충으로 정의됩니다.

- 캘리포니아 주의회 또는 주정부 공직에 임명 또는 선발되었거나 후보자였던 사람
- 캘리포니아 정당이나 캘리포니아 주의회, 선거로 선발되는 주정부 공직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였던 사람
- 캘리포니아 정당의 중앙 위원회에 선발되었거나 임명되었던 사람
- 등록된 연방 로비스트
- 캘리포니아 주 또는 캘리포니아 지방 정부에 등록된 로비스트
- 캘리포니아 주의회, 입법부, 조세형평국의 유급직원
- 시기를 막론하고 캘리포니아 주의회, 주정부, 선거로 선발되는 공직의 지역 후보자에게 한 해 \$2,000 이상 기부한 적이 있는 사람

캘리포니아 주지사, 캘리포니아 입법부 의원,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, 조세형평국 의원의 직원 또는 컨설턴트로 일하였거나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거나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이해상충의 대상에 해당됩니다.

###

